

제324회 정례회  
기획경제위원회

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(이숙자 의원 발의)

# 제 안 설 명

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이 숙 자  
(국민의힘, 기획경제위원회)

존경하는 선배·동료위원 여러분!

서초구 제2선거구 국민의힘 이숙자 의원입니다.

본 의원이 대표발의한

‘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’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정부는 지난 2022년에 장애인의 창업과 경영활동을  
지원하기 위해 「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」을 개정하여

장애인에 대한 창업 지원 및 창업교육·상담·정보 제공 사업,  
장애경제인의 기업경영을 위한 활동 보조인력 지원 사업의  
근거 규정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.

그러나 현행 조례에는 이러한 법률 개정의 내용이  
반영되어 있지 않은 바,

서울시 차원의 장애인 창업 지원 및 창업교육·상담·정보  
제공 사업과 장애경제인의 기업 경영을 위한 활동  
보조인력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조문을  
신설하고자 합니다.

또한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의 위원 자격에

‘장애인기업인 대표’를 추가하여 보다 실질적인  
장애인기업 지원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.

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 
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

본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 
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
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 
감사합니다.